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13 | November 2023

삼성KPMG 세무본부 TKC

Contents

	Page
법인세법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국승) •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납세자승) • [심판례]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예규]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소득세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 (국승) •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부가가치세법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규]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례] 구 상속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국승) 	
지방세법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판례]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경정) • [심판례]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경정) • [심사]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법인세법

[판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사안]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를 부여하였고,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음.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음.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판단]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신설규정”)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나아가 신설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별규정이 없었던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약설(略說)]

- 원심은 이 사건 행사차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로서 손금의 요건인 사업관련성,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원고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다름이 없어 원고에게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에 비견할 만한 효과를 발생시키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는 ‘형식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12690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임.

[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국승)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사안] 원고는 2010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였음.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이후 2개 사업연도인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음.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 “2017 및 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

[판단]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게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따라서 법인이 어느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나아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원칙으로 돌아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법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약설(略說)]

- 위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법리 설시 부분은 대상판결에서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기존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것임(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4870판결).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납세자승)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사안] A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 실시 후 2018. 5. 28.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피고는 “원고가 2010년경 이중장부 작성, 관련 컴퓨터 기록 삭제 등 매출누락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예외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6. 1. A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2010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를 각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 사건 원처분”)를 하였음.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취소처분하였으나 원고는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나머지 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위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구제절차이기는 하지만, 국세부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신용실추, 자력상실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세징수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그 대상이나 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 15 제2항 각 호에서는 납세자가 가지는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용인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는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는 납기전징수의 사유 중 하나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를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제도의 취지, 납기전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긴급하게 과세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약설(略說)]

- 대상판결은 법령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에 관하여 최초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심판례]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3서7513, 2023. 10. 5.

[사안] 청구법인은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부터 쟁점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거래소(“이 사건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는 한편, 쟁점가상자산의 매도금액 등을 원화 또는 쟁점가상자산으로 출금해 주고 있음. 처분청은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쟁점거래차익”)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20·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2020·2021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분)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함.

[판단] 소득세법 제119조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따라 설정된 권리와 그 밖에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제12호 마목)을,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제12호 카목)을 열거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 및 차목 또한 위와 같은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이는 점(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고,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약설(略說)]

- 같은 취지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음(조심 2020서7378, 2022. 1. 18.).
- 한편, 2020년 말 세법 개정 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새로이 열거되었으나(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카목), 2025. 1. 1. 이후로 그 시행이 유예됨. 조세심판원의 입장에 따르면, 위 신설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예규]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0592, 2023. 10. 6.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약설(略說)]

- 국세청은 BOT 자산 신축가액을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법인세과46012-716, 2001. 5. 18.).
- 위 대상예규(법규법인-0592)는 질의법인인 사업시행자(토지 임차인)가 BOT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는 BOT 자산가액을 토지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유형자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유형자산에 대한 감액손실(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이나 ‘유형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소득세법

[판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 (국승)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사안] 피상속인은 2008. 8. 8.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1. 3. 31.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1은 위 상속세 신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년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평가가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6. 1. 13 원고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그 일부를 취소하여 감액경정·고지하였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9. 7. 21. 및 2009. 11. 10. 양도되었고, 피고2는 그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2016. 1. 1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3 제1항 각 호는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관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약설(略說)]

- 원심은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 4 제1항 제1호 단서의 시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3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2가 산정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위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 8. 13. 선고 2019누56502판결), 대법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임.

[심판례]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3서9271, 2023. 10. 20.

[사안] 청구법인은 매년 초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청구법인과 제휴된 복지포털 등을 통해 개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2017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위 제도에 따라 복지포인트(“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속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서로 정의규정 및 입법목적이 같지 않으므로 이를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약설(略說)]

- 같은 취지의 기존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음(조심 2021전4983, 2021. 11. 26.).
- 위 대상심판례와 달리, 최근 하급심 법원은 ① 근로소득은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하는 점,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라 함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업근로복지 중 하나인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음(대전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누13617 판결).

부가가치세법

[예규]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2023. 10. 26.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약설(略說)]

- 국세청도 위 기재부 예규와 동일한 입장임(서면-2018-법령해석법인-2036, 2019. 12. 6.).
- 위 기재부 예규(금융세제과-352)와 달리, 조세심판원은 결제 당시부터 현장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수익금액) 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현장할인 관련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조심 2020서1311, 2021. 3. 17.).
- 한편, 최근 하급심 법원은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에 따른 할인분담금 역시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1구합67732 판결, 2022구합54443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사안] A(“망인”)은 2019. 1. 31.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B와 자녀인 원고 C는 망인 소유이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2019. 7. 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 한편,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일부 수령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 전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 9. 30. 상속인들을 거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판단] 원심은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상속인인 배우자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등기관리자에게 직접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문언,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인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이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으로 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약설(略說)]

- 대상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신고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이 아닌 단순 협력의무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세심판원도 대상판결과 동일한 입장임(조심 2021서3693, 2022. 5. 13.).

지방세법

[심판례]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경정)

조심 2023지3665, 2023. 9. 27.

[사안] 청구법인은 2019. 8. 2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2019. 9. 9. 자본금을 증자(출자전환)하고, 이를 등기(“이 건 등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가목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이 건 등록면허세 등”)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함.

[판단]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76. 12. 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부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부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약설(略說)]

- 대상심판례는 법률 간의 불일치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한편, 위 법률간의 상충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3. 8. 17.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부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심판례] 일반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매각된 쟁점면적부분을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경정)

조심 2021지2372, 2023. 9. 27.

[사안] 청구법인은 2016. 1. 27. 처분청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1. 5. 법률 제17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20. 6. 10.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20. 6. 17. 쟁점건축물 연면적 중 72.6%에 해당하는 면적 및 그 부속토지(“쟁점면적”)를 체비지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최종)를 받은 후, 2020. 7. 8. 소유권 이전고시를 거쳐 쟁점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특법”) 제47조의 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신고·납부하였으나, 2021. 2. 18. 구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체비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청구법인은 2016. 1. 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소유권 이전고시 전인 2020. 6. 17. 처분청으로부터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쟁점면적이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분양공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면적에 대하여 분양공고상 일반분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청구법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체비지인 쟁점면적을 자가 공급하지 아니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매각)하였으므로 구 도시정비법상의 체비지 처분 요건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 수 있게 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9지3805 외 2, 2023. 3. 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매각대금 중 쟁점면적에 대한 대가(72.6%)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비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사실을 달리 제시하지는 아니하므로 쟁점면적을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1인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과 2인 이상에게 매각하여 사업경비에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쟁점면적을 1인에게 일괄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인 체비지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쟁점면적은 구 지특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체비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약설(略說)]

- 대상심판례의 사안과 같이 제3자(1인)에게 매각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는 해당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하는 환지부동산과 다를바 없어 체비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음(조심 2020지0726, 2023. 3. 31. ; 지방세특례제도과-1503, 2022. 7. 12.).

[심사]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감심 2021-1078·1079, 2023. 9. 7.

[사안] 청구법인은 경기도에 골프장(회원제·대중제)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2015. 12. 28. A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지특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 따라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토지·건물·건축물·입목·시설물(“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자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처분”).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구 지특법 제57조의 2 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회원제 골프장은 새로 만들어 신규 등록하거나 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사실상 사용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청구법인이 A사로부터 기존의 골프장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처분청은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 2018. 9. 14. 자 법령해석례 18-0194)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의 대상인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을 해석할 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도 취득세 감면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문언과 달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처분청은 지방세법과 지특법으로 분법되기 이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에서도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연혁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감면제외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분법 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에 따라 분할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그 감면세액은 분법 전 지방세법 제291조를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약설(略說)]

- 최근 하급심 법원은 회원제골프장을 합병에 의해 승계취득하는 경우 지특법상 취득세 감면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면제외규정을 해석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승계취득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는 감면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수원고등법원 2022. 1. 28. 선고 2021누11384 판결), 피고(처분청)의 상고 포기로 해당 판결이 확정됨.
- 위 대상심판례에서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법제처 해석(법령해석례 18-0194)에서는 구 지특법 제177조의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각 호의 부동산등'으로 수정하여 감면 제외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고, 2020. 1. 15. 지특법 개정 시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도 감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됨.

삼성KPMG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박재현
S.Senio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주정연
S.Senio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